

ESG 핵심 규제법안 현황 - EU

유럽연합(EU)의 주요 탄소규제 흐름 분석



임팩트온 리서치 센터

CONTENTS

01 EU 탄소규제 트렌드	03
02 4단계 가치사슬별 EU 탄소규제 트렌드	07
03 EU 탄소규제 세부 분석	10
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0
② 에코디자인 규정(ESPR)	13
③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15

문의: 임팩트온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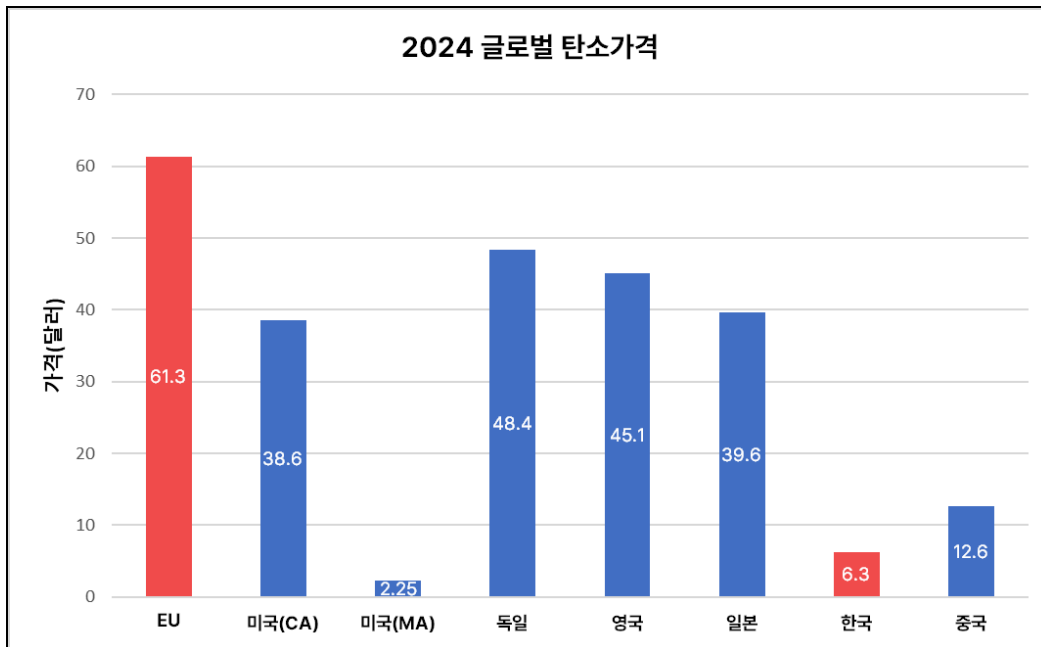
(02-777-0603, master@impacton.net)

1. EU 탄소규제 트렌드

- EU는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를 중심으로 역내 탄소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62%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임.
- **2040년 90% 감축 ‘잠정 합의’(2025.12)**
- EU는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해 세기 중반 넷제로 목표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에 잠정 합의함. 이번 기후법에는 2050년 넷제로를 모든 회원국에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됨. 2040년 90% 감축에 대한 잠정 합의가 도출되면서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 한도도 종전보다 확대되었음
- 핵심은 국제 크레딧으로 충당할 수 있는 감축분의 상한을 ‘감축의 5%p’로 설정했으며, 이는 집행위원회 초기 제안치였던 3%p보다 2%p 높음. 즉, 이 조정으로 EU의 실질적인 역내 감축 목표가 약 85%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합의안은 운송·난방용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탄소시장(ETS2)의 시행을 2028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음.** 원래 ETS2는 2027년부터 적용하며 건물·도로수송·연료 부문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고, 해운 부문을 규제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1년 연기되었음
- 2040년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유연성’ 조항을 신설해, 국제 탄소크레딧의 활용 범위와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포함함
- 부문 간·수단 간 유연성 확대를 통해 ETS 내에서 감축이 어려운 배출을 ‘역내 영구적 탄소 제거’로 상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됨. 유럽의회는 특히 EU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파트너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함
- 또한 합의안에는 2040년 목표에 대한 ‘검토’ 조항이 포함. 집행위원회는 2년마다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최신 과학 자료, 기술 발전 속도, 국제 경쟁력, 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EU 기후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2040년 목표 조정 또는 경쟁력·번영·사회적 안정성을 보완하는 추가 지원 조치 등을 포함

- **탄소비용 격차:** 2024년 EU 평균 탄소배출권 가격이 61달러로 한국(6달러), 중국(13달러), 미국 캘리포니아(39달러)에 비해 월등히 높아 탄소누출(Carbon Leakage)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정책 도입 배경:** 탄소누출 방지와 EU 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역외 기업에도 EU와 동등한 탄소 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공정경쟁 환경(Level-playing Field) 조성을 목표로 함
- **통상 규제 성격:** 이러한 조치는 역외 수출기업에 추가적인 비용과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2024년 기준 글로벌 탄소가격



EU 탄소 규제의 3가지 특징

① 비용 부과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BAM은 수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대해 EU ETS와 연동된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배출이 많은 생산자일수록 EU 수출 가격이 상승함
- EU 역내 기업 보호: 탄소비용이 낮은 국가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여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 탄소누출 방지: 높은 탄소비용 회피를 위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
- 실질적 관세 효과: WTO 규범상 환경 목적 예외 인정 여부 논란이 있으나, 사실상 관세와 유사한 무역장벽 역할 수행

② 기술규제 및 표준 - 에코디자인 규제(ESPR) 등

-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 탄소발자국 표시 등을 의무화해 친환경 제품 기준을 강화함
- 설계 단계 규제 강화: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성, 유해물질 제한 등을 법제화
- EU 기업 우위: 역내 기업은 이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나, 역외 기업은 인증 취득·기술 개선에 추가 비용 발생
- 시장 진입 장벽: 표면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나, 실질적으로는 역외 기업의 부담이 커져 시장 진입이 어려워짐

③ 정보공시 및 실사 - 비상장 중소기업 자발적 공시기준(VSM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 대기업에 부과되는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의무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어 중소기업에도 간접적인 부담을 초래함
- 공급망 책임 강화: CSDDD를 통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인권 관리 체계 여부를 점검
- 중소기업 공시 확대: VSME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발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장려하며, 장기적으로 공시 체계 표준화시킬 가능성 존재
- 기준 미충족시 제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EU 시장 진입이나 영업 지속에 제약 발생
- 이행 준비 요구: 인증·감사 절차를 거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환경·인권 영향을 줄이며, 관련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2. 4단계 가치사슬별 EU 탄소규제 트렌드

- EU는 제품의 설계·구매, 제조, 포장·운송, 사용·폐기에 이르는 4단계 가치사슬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의 핵심을 공급망 환경영향 관리에 두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감축 방안과 정량적 목표를 요구함

[그림] EU 가치사슬 단계별 환경영향 관리 요소



① 제품 설계 및 원자재 구매

- EU는 에코디자인 지침(ESPR)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 원자재 구매와 제품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음. EU집행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제품 환경영향의 최대 80%가 설계 단계에서, 생태계 손실의 약 90%가 원자재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환경영향 관리가 핵심임
- 설계 규제 강화: 에너지 효율, 내구성, 재활용성, 유해물질 제한을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법제화
- 공급망 책임 강화: 대기업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인권 관리 체계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일부 원자재에 정량적 재활용률 기준을 부과
- 기업 대응 사례: BMW 등은 ‘친환경 원자재 우선 구매 원칙’을 도입해 재활용 원자재 수급을 확대

② 제조 단계

- EU는 배출권거래제(EU 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고 있음.
- 또한 산업배출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과 화학물질 관리 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REACH)를 통해 제조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과 기술 활용을 엄격히 규제함
- 탄소배출 비용 내재화: EU ETS로 역내 제조기업에 높은 탄소비용을 부과하고, CBAM을 통해 역외 생산 제품에도 동일 수준의 탄소비용을 적용
- 환경 기술 도입 의무: IED에 따라 대형 산업시설은 오염물질 배출 시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함. BAT는 최신 환경기술 기준과 공정 개선 지침을 제시해 현장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임
- 유해물질 관리 강화: REACH 규제를 통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

③ 포장·운송 단계

- EU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를 통해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 용이성을 의무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함. 운송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분야이지만, EU는 2027년부터 ETS II를 적용해 해운을 포함한 운송 전반에 탄소비용을 부과할 예정임
- 포장 규제 강화: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구조 설계 의무화와 폐기물 발생 최소화 기준 부과
- 운송 부문 확대 적용: ETS II를 통해 해운·도로·기타 운송 부문에 탄소비용 부과 예정
- 산업 대응 사례: 머스크 등 글로벌 해운사는 친환경 선박과 저탄소 운송 서비스를 도입해 규제에 대응

④ 사용·폐기 단계

- EU는 제품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 내구성, 수리 가능성을 높이고, 폐기 단계에서는 재활용·재사용을 의무화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규제를 시행함. 이를 통해 제품 수명 연장과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있음
- 사용 단계 효율 강화: 에너지 효율 등급 공시, 내구성 확보, 수리 용이성 확대 등으로 사용 중 환경부하를 줄임
- 폐기 단계 순환 촉진: 제조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부품 해체가 용이한 설계와 재활용률 정량 목표 설정
- 주요 원자재 대상 재활용 요건 부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특정 원자재에 대해 구체적인 재활용 비율 기준 부과

3. EU 탄소규제 세부 분석

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BAM은 EU 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 가격 체계를 역외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환경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EU 역내 제조기업이 배출권거래제(EU ETS) 등 탄소규제를 준수하며 부담하는 비용을, 규제가 느슨한 역외 제품에도 부과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함
 -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를 전환기(Transitional Phase), 2026년부터를 확정기(Definitive Phase)로 구분해 운영함.
 - 전환기에는 수입자가 Scope 1(직접 배출) 기준 배출량만 분기별로 보고하며, 검증과 인증서 구매 의무가 없음. 확정기에는 Scope 2(에너지 간접 배출) 및 전구물질 보고 가능성이 포함되며, 연 1회 보고·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부과됨
 -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 확정기 이후에는 제품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인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함
 - 내재배출량은 수출기업이 산정해 EU 수입자에 제공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ETS 평균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됨. 인증서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가격의 최대 3배 벌금이 부과됨
-
- **2025년 10월, CBAM 단순화 규정 공식 발효(Regulation EU 2025/2083)**
 - **50톤 'de minimis' 면제 규정 공식 도입** → 소규모 수입자·개인 중심 18만여 CBAM 수입자를 면제하면서도, 대부분(99% 이상)의 배출량은 제도 내에 유지
 - **보고 및 인증 절차 간소화** : CBAM 신고자(authorised declarant) 승인 절차 완화, 배출량 산정·검증 방식 일부 간소화·명료화, 재정적 의무(인증서 구매·정산) 구조 정비, 특히 중소 수입자의 규제·준수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

- **향후 제3국 탄소가격 인정 구조** : 2027년부터, 탄소가격 제도가 있는 제3국에 대해 ‘표준 탄소가격’을 설정, CBAM 계산 시 이를 공제(디스카운트)하는 방식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표] CBAM 전환기·확정기 운영 비교

구분	전환기 (2023.10.1~2025.12.31)	확정기 (2026.1.1~)
제도 성격	이행 연습기간	본격 의무화 시행
보고 대상	Scope 1(직접배출)	Scope 1(직접 배출) + Scope 2(에너지 간접 배출), 전구물질 배출 가능성 포함
보고 주체	EU 수입자	EU 수입자
보고 주기	분기별	연 1회(매년 7월 31일까지 전년도 내역 보고)
보고 방식	EU CBAM IT 시스템 제출(검증 선택사항)	보고 + 검증 필수, 인증서 제출 병행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음	있음(수입품의 내재배출량만큼 구매)
인증서 가격	해당 없음	EU ETS 평균 경매가격 기반
인증서 제출 시기	해당 없음	매년 9월 30일까지 전년도 수입분 정산
위반 시 패널티	허위·미제출 시 행정 벌칙 가능	인증서 미제출분에 대해 벌금(인증서 가격의 최대 3배) 부과

- 2025년 12월, CBAM 적용 범위 최종 완제품까지 확대 방침
- EU가 기존 중간재(철강·알루미늄 등) 중심 → 세탁기·가스레인지·자동차 문·정원용 공구 등 최종 완제품까지 확대할 방침
- 일부 수입업체가 튀르키예 등지에 가공시설을 설치 후 완제품을 EU에 역수출하는 흐름을 발견함. CBAM 대상 품목이 중간재이므로, 완제품으로 들어오면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회피 경로가 존재함

- **적용 품목**

- 초기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고탄소 산업 6개 품목이며, EU 통합품목분류체계(CN 코드)를 기준으로 세부 품목이 지정됨(품목 확대 논의중). 수출기업은 자사 제품의 CN 코드가 CBAM 적용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EU 수입자는 해당 제품의 배출량 정보를 받아 CBAM 시스템에 보고해야 함

- **등록 및 보고 절차**

- 수출기업은 EU 집행위에 CBAM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 시 등록 정보는 5년간 보존됨. 등록 기업은 배출량 계산, 제3자 검증, 자료 보관(4년) 의무를 지며, 신고 이후 EU 당국은 4년간 적정성을 검토함. 미신고·과소 신고 시 추가 인증서 제출이 요구되며, 과다 제출 시 환급 가능함

- **위반 시 제재**

- 보고 의무 위반 시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미준수 또는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강화됨. 단, 150유로 이하 소형 제품이나 군사용 물품은 예외이나, 이를 악용한 분할 선적·CN 코드 조작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② 에코디자인 규정(ESPR)

- 가치사슬 통합 관리 정책: 유럽 그린딜 하에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전체의 약 80%)을 줄이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함
- 규제 대상 확대: 기존 에너지 관련 제품에서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확대되며,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섬유, 플라스틱 가공품, 전자부품 등)도 장기적으로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표] 기업 규모별 주요 규제 적용 현황

구분	기준	에코디자인 규정(ESPR) 요구사항	디지털 제품 여권(DPP) 발급 의무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의 파기 금지	파기 관련 연간 정보 공개 의무
대기업	직원 수 250명 이상, 연매출 5천만 유로 이상 또는 연간 자산 4천3백만 유로 이상	의무 적용	의무 적용	적용 대상	필수(웹사이 트 공개)
중견기업	직원 수 250명 미만, 연매출 5천만 유로 미만 또는 연간 자산 4천3백만 유로 미만	의무 적용	의무 적용	면제 가능	면제 가능
중소기업	직원 수 50명 미만, 연매출 1천만 유로 이하	의무 적용	의무 적용	면제 가능(특히 소기업 중심)	면제 가능(규칙에 따라 상이)
소기업	직원 수 10명 미만, 연매출 2백만 유로 이하	의무 적용	의무 적용	적용 면제	면제

- **영향도 높은 제품 우선 규제:** 소비자 접점이 높거나 환경영향이 큰 품목을 우선 규제 대상으로 지정함. 2025년 4월 16일 발표된 ESPR 작업 계획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섬유(의류),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등 5개 제품군이 향후 5년간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됨
- **기업 규모별 시행 시점 차등:** 각 제품군별 위임법 제정 이후, 대기업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시작되는 첫 회계연도부터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2030년 7월 19일부터 적용됨. 직원수 10인 미만 소기업은 정보 공개 의무에서 면제됨
- **전 기업 공통 설계·정보 공개 의무:** 모든 규모의 기업이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발급해야 함. 반면,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의 파기 금지와 파기 관련 연간 정보 공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면제 가능함
- **역외 기업까지 적용 확대:** EU 역내 사업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역외 기업이 대상이므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됨

ESPR 핵심 규제 내용

- **지속가능성 평가 프레임워크:** 내구성, 신뢰성, 재사용 가능성, 개조 가능성, 수리 가능성, 유지보수·재가공 가능성, 우려 물질 존재 여부, 에너지 사용·효율성, 물 사용·효율성, 자원 사용·효율성, 재활용 소재 비율, 재제조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원자재 회수 가능성, 환경 영향, 예상 폐기물 생성 등 16개 공통 지표를 설정
- **제품군별 맞춤 규제:** 실제 적용 시 제품군별로 중점 평가 항목과 측정·평가 방법을 별도로 설정함(예: 스마트폰은 내구성·수리 가능성·재활용 가능성을 중점 적용)
- **항목별 요구 수준 차등화:** 일부 항목은 단순 정보 공개만 요구하나, 재활용 소재 비율·내구성 등은 정량 기준이나 설계 의무로 강화됨
- **DPP 발행 및 활용:** 제품별 환경·지속가능성 정보를 디지털 ID에 기록·관리하며, QR코드·바코드로 소비자와 규제기관이 실시간 열람 가능
-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함**

③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 EU는 기존 포장폐기물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PPWD)의 이행 한계를 극복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11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발효하고 2026년 8월 12일부터 기업에 본격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함
- **포장 폐기물 총량 감축:**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포장 폐기물 총량 5%, 2040년까지 1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EU 회원국뿐 아니라 EU 수출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목표 미달 시 벌금, 수출 제한, 제품 리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기업은 자체 감축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재활용 중심 설계 기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하도록 의무화하며, PPWR은 이를 위해 재활용 성능에 따른 등급 체계를 A~E로 구분하여 법적으로 적용함. **A등급은 95% 이상, B등급은 85% 이상, C등급은 7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의미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C등급 이상을 확보해야 함. 2038년부터는 최소 B등급 이상의 고품질 재활용 포장재만 허용됨**

[표] 포장재 유형별 재생 플라스틱 최소 사용 비율(2030·2040 목표)

포장재 유형	2030 목표	2040 목표	비고
PET (내용물 직접 접촉)	30%	50%	식품·화장품·연고 등 인체 접촉 제품
PET 외 (내용물 직접 접촉)	10%	25%	우유팩 내부코팅, 컵라면 용기, 투명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	30%	65%	PET·PP·PS 등 포함
기타 플라스틱 포장	35%	65%	비식품·비음료 포장 포함

- **라벨링 일관성과 사용 제한:** 동일 재질·표시를 통한 라벨링 일관성을 유지하고, 호텔·식당 등에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함
-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사용 제한: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해, 물·기름·열에 강하지만 환경과 인체에 축적돼 유해성이 우려되는 PFAS 함량을 규제함. 개별 성분은 25ppb, 총합은 250ppb, 총플루오린(total fluorine, 불소 총량)은 50ppm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생 플라스틱 의무 비율:** 내용물 직접 접촉 PET 포장은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50% 이상, PET 외 포장은 2030년 10%, 2040년 25% 이상을 재생 플라스틱으로 채워야 함.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는 2030년 30%, 2040년 65%, 기타 플라스틱 포장은 2030년 35%, 2040년 65%를 충족해야 함
- **재활용 방식 우선순위:** 기계적 재활용(세척·분쇄·재가공)을 우선 적용하되,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도 보완적으로 허용함

주요 행정 업무

- EU로 포장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PPWR 규정에 따른 필수 행정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적합성 평가, 문서 보관, 라벨링, 수입업자 정보 기재, 보관·운송 관리, 시장감시 대응, 대리인 지정 등 전 과정을 이행해야 함
-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 포장재가 규정 제5~12조에 따른 재질, 재활용성, 유해물질 제한 등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문을 작성·보관해야 함
- **기술문서·선언문 보관 의무:** 단일사용 포장재는 시장 최초 공급일로부터 5년, 재사용 포장재는 10년간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라벨링 및 동봉문서 제공:** 규정 제12조에 따른 분리배출 라벨을 부착하고, 적합성 선언문 등 필수문서를 포장에 동봉하거나 QR 코드 등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야 함

-
- **수입업자 정보 기재:** EU 내 수입업자가 포장재를 공급할 때, 포장재 겉면에 명칭(상호·상표), 우편주소, 전자적 연락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수출업체는 이를 반영한 포장 디자인을 준비해야 함
 - **운송·보관 조건 준수:**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포장재의 구조, 라벨, 기술문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시장감시 당국 대응 의무:** EU 회원국 시장감시 당국 요청 시, 제조자는 10일 이내 기술문서, 적합성 선언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나 회수에 협조해야 함
 - **역외 기업 이행 절차:** EU 역내에 법인이 없는 기업이 제3국에서 제조한 포장재를 EU 회원국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자’로 간주됨. 따라서, PPWR에 따라 각 회원국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이행을 위해 공식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함